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
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68호, 2021. 4. 13. 공포, 2021. 7. 14. 시행)됨에 따라, 위원회에서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의 건강에 관한 정보, 참고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5. 25. ~ 6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법 제19조제12항에서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1.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의 개인정보로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

2. 참고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

가.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

나.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조사 절차 및 방법) ①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3조(조사 절차 및 방법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법 제19조제12항에서 “「 <u>개인정보 보호법</u> 」 제24조에 따른 <u>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</u> 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1. <u>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의 개인정보로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</u> 2. <u>참고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</u> 가. 「 <u>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</u> 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<u>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</u> 나. 「 <u>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</u> 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<u>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총괄과	
연 락 처	(02) 6124 - 7431